「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환불기간 변경 안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국가자격 수험자의 안전을 위해 감염을 우려하여 시험에 미응시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환불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합니다.

○ 변경사항

시험 구분	당 초	변 경
국가기술자격시험	□ 100% 환불 ㅇ 접수기간 내 취소	□ 100% 환불 ㅇ 접수기간 내 취소 ㅇ (추가 조치)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 (증빙서류 필요)
	□ 50% 환불 ㅇ 접수 마감일 다음날~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 전 취소 * 관련근거: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검정관리운영규정	□ 50% 환불 ㅇ 접수 마감일 다음날~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 전 취소 ㅇ (추가 조치) 접수 마감일 다음날~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1일 전(~오전 11:00까지) 취소 단, 시행일 초일 1일 전이 주말(토,일)인 경우는 직전 금요일 오전 11:00까지 취소
국가전문자격시험	□ 100% 환불 ㅇ 접수기간 내 취소 ㅇ 사회복지사1급: 20일 전까지	□ 100% 환불 ㅇ 접수기간 내 취소 ㅇ 사회복지사1급: 20일 전까지 ㅇ (추가 조치)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 (증빙서류 필요)

시험 구분	당 초	변 경
	□ 50～60% 환불 ㅇ 사회복지사1급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50% 환불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60% 환불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50% 환불 ㅇ 변리사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50% 환불 * 관련근거: 종목 별 해당 법령	□ 50～60% 환불 ㅇ 사회복지사1급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50% 환불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60% 환불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50% 환불 ㅇ 변리사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50% 환불 ㅇ(추가 조치) 환불종료일 이후～회별 시행일 초일 1일 전(～오전 11:00까지) 취소 단, 시행일 초일 1일 전이 주말(토, 일)인 경우는 직전 금요일 오전 11:00까지 취소: 50% 환불

○ 적용기간 : 2020년 2월5일부터 2월29일(회별 시행초일 기준)내에 시행하는 시험에 한함

○ 적용대상 시험

-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상시) 기능사 제3회, 제4회 필기시험
-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상시) 기능사 제2회, 제3회 실기시험
-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 제27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 제57회 변리사 1차

※ 단, 적용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 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의 경우,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원서를 접수한 공단 각 지부·지사로 환불 신청 시 100% 환불 가능

* 자가격리 이상 감염 우려자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중국을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자가격리 대상자[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인 자,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인 자]

** 증빙서류 : 환불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기타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명서(진단서, 격리대상자 확인서 등), 신분증 제출

2020년 2월 5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